

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교 육 청 소 년 과

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4. . .
발 의 자	김정도 의원 외 8인

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정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: 2024. . .

발의자: 김정도·김영길·김재우·김춘남
이명희·이지연·장미경·장세구
허민근 의원(9인)

1. 제안이유

구미시에 거주하는 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을 보장하고, 교육경비 보조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인재양성 및 진로·진학 지원, 통학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접근성 강화 및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보조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교육기본법」 제4조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11

3)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 제2조

나. 부서검토: 교육청소녀와 의견제출(별첨)

다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(별첨)

라.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제8호로 하며,
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인재양성 및 진로·진학 지원 사업

7. 통학로 안전 개선 및 통학 이동거리에 따른 통학버스 지원 등 통학
환경 개선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교육기본법」

제4조(교육의 기회균등 등) ① 모든 국민은 성별, 종교, 신념, 인종, 사회적 신분,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□ 「초·중등교육법」

제60조의11(통학지원)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

제2조(보조사업의 범위)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이하 “지방자치단체”라 한다)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(이하 “보조사업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학교의 급식시설·설비사업

2.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

2의2.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

3.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

4.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

5.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·문화공간 설치사업

6.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보조사업의 범위) ① 구미 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각급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(이하 “보조사업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와 같다.	제2조(보조사업의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6. 인재양성 및 진로·진학 지</u> <u>원 사업</u>
<u><신 설></u>	<u>7. 통학로 안전 개선 및 통학 이</u> <u>동거리에 따른 통학버스 지원</u> <u>등 통학환경 개선사업</u>
<u>6. (생 략)</u>	<u>8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u>